

○○구

수신 서울특별시(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2015년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지원 요청

1. 주차계획과 - 1478(2016.01.29)호와 관련 입니다.
2. 우리 구 2016년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주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요청 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요청 내역

(단위:천원)

연번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대상지					사업비			교부 요청금액
	위치	면적	주차면수	협약·협의대상	재개발·뉴타운 지역 여부	계 (100%)	시비 (00%)	구비 (00%)	
계									
1									
2									
3									

※ 협약·협의대상 : 개인소유 토지는 토지주, 공공기관 소유토지는 재산관리부서(공공기관 소유 토지는 신청시 협의공문 첨부)

- 붙임 : 1. 신청서 각 1부.
2. 대상지 현황 각 1부.
3. 협약서 각 1부. 끝.

○○구청장

★◎주무관

주차기획팀장

교통지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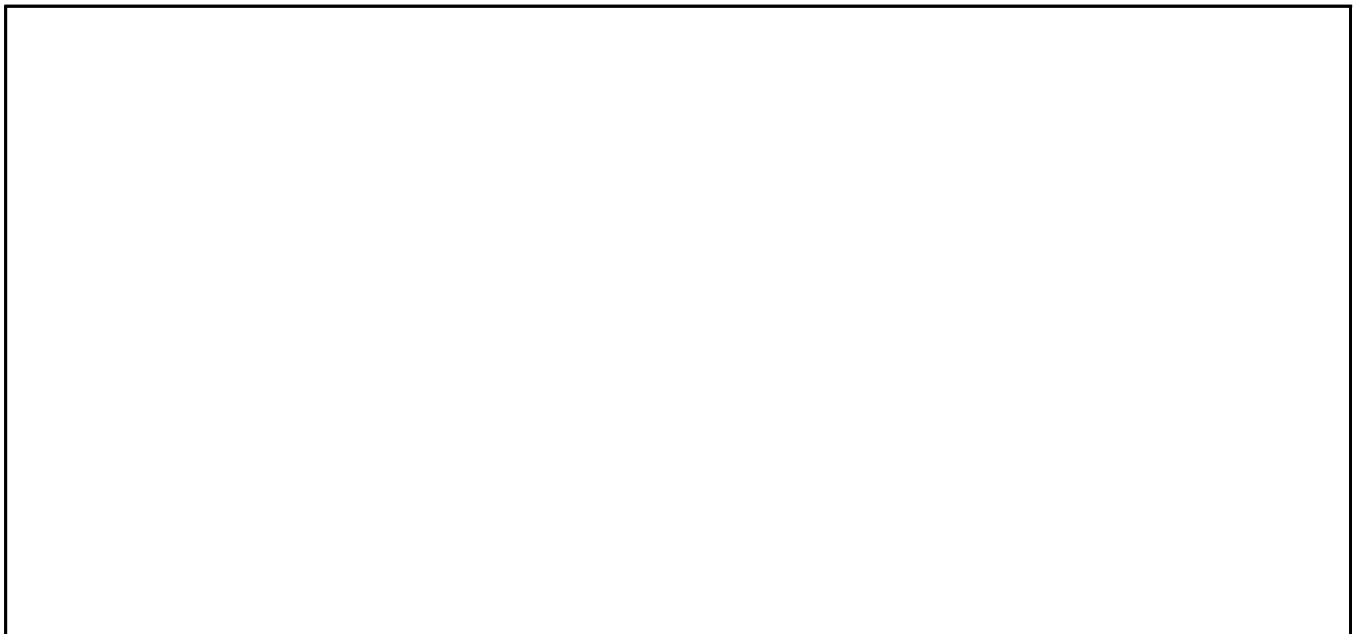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0000 (2016.01.14.) 접수 ()
우 158-702 서울특별시 ○○구 / http://www.*****.go.kr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 0000@00000.go.kr / 공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대상지 현황

위 치			
소 유 주			
면 적	m ²	예상조성면수	면

■ 위치도



■ 현장사진

--	--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〇〇동 〇〇번지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양 자
간에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라 한다)과 소유자 〇〇〇
(이하 “토지주”라 한다)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주차장 설치 개요

○ 주차장명 : 자투리땅 주차장 제 호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〇〇동 〇〇번지

○ 주차구획 : 면 (m²)

※ 주차면수는 현장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〇〇구”는 “토지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대문구 〇〇동 〇〇번지 “토지주”의 토지에 “〇〇구”의 비용
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서대문구”가 운영함에 있어 제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주”는 협약된 개방기간 동안 주차장법 제12조에 의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한다.

제3조(조건) “서대문구”는 “토지주”가 제공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공의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임시중단 또는 폐쇄할 경우 3개월 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기간) ① “서대문구”가 조성한 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협약
기간을 주차장 운영시점으로부터 1년(2015.00.00~2016.00.00)으로 한다.

② “서대문구”와 “토지주” 쌍방간 기간 만료 3개월 이내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 협약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운영방법 및 주차요금) 거주자우선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징수와
세부적 운영방법은 “서대문구”가 결정한다. “서대문구”는 주차장의 이용 주민선정,
요금징수, 주차권발급, 이용차량, 징수금액 통보 등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한다.

제6조(우대사항) ① “서대문구”는 “토지주”의 주차장 개방에 대한 수입금의 100%를 지급하고, 주차장 시설물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② 주차수입금 지원없이 1년 이상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기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수입금 지급방법) ① 우대사항으로 지원되는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수익금은 반기별(연 2회)로 지급한다.

② “서대문구”는 토지소유주의 은행계좌에 토지소유지분에 따라 주차수익금을 무통장 입금하며 협약 이후 입금계좌 변경은 별도 신청을 해야한다.

제8조(공사비의 반환) 주차장 개방 후 “서대문구”와 체결한 협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물 지원공사의 실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대문구”와 “토지주”는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법의 일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약정의 효력은 “서대문구”와 “토지주”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약정 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내용을 변경, 조정할 수 있으나 “서대문구”와 “토지주”는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자간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 .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번지 서대문구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

(토지주) 서울시 서대문구 ○○동 ○○번지 ○호
○○○ (인)